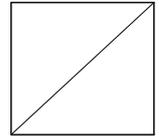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 호	심 의 사 항
심 의 연 월 일	2023. 3. 30. (제 00 회)	

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
심의회 운영위원회

제 출 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
제출 연월일	2023. 3. 30.

1. 의결주문

- 「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인 「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

- ① 국가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
- ② 연구기관과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연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

나. 2023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

- ①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(과기정통부, '22.11~'23.2월)
 - 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
* 주제별, 주체별, 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
- ② 기본지침 마련 (과기정통부, '23.3월)
 -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(3.9.)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

다. 2023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

①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

- 혁신법과 달리 연구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처규정을 지속 정비하고 연구현장에서 관심 많은 제도·시스템에 대한 현장교육 확산
-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관행을 혁파하고 중복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
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원가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내실화, 박사 후 연구자 지원 강화 등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안정화

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

-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등 중장기 대형과제에 대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연구 유연성 제고
-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 연구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및 행정부담 완화 등 검토
-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지방현장과 밀접한 연구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검토

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

- 규모·위험이 크고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초기 기초연구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
- 정부납부 기술료제도, 부도·폐업·파산 등 경영악화 시 정산금 유예, 평가체계 개선 등 기업 및 연구분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검토
-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업 초기기업,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검토

④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-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동향에 대응하여 혁신법령 및 부처규정 정비 등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
- 이해상충방지방안에 대한 선진사례(미·일 등)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

라. 향후계획

①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(관계부처('23.4월), 연구현장('23.4월 ~ 5월))
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
② 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3.6월 ~ 8월)
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제도개선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
③ 연구제도 개선 (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, '23.9월 ~)

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2023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	1
II. '23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 경과	2
III. '23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	3
1.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	4
2.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	5
3.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	6
4.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	7
IV. '23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	8
붙임.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	9
참고.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추진 경과	11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

1 의 의

-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제도*(이하 '연구제도') 개선
 - 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·시책 등을 포괄
 -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
-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고,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달성하는 법 취지의 지속 추진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'혁신법')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며, 연구기관·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체감형으로 제도 고도화

2 운영 근거 :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**(법 제28조)**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**(법 제29조)**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마련

- **(제1항)** 과기정통부는 당해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- **(제2항)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- **(제3항)**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
- **(제4항)** 관계부처별로 다음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

- **(법 제30조)**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과 이에 근거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개선 권고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Ⅱ. '23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

1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

- 연구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

<연구현장 의견 수렴 경과('22.11.~'23.2.)>

- (주제별) 국제협력, 도전혁신, 사회문제해결 연구, 연구보안에 대한 의견수렴
- (주체별) 대학, 출연연, 대기업, 중견중소기업 등 연구개발기관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
- (권역별) 수도·강원, 충청, 호남, 영남 등 각 권역의 전문가 의견수렴
- (기 타) 정책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

- 제도개선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산·학·연 전문가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 ('23.1월)

- ☞ 제도개선위원회·과기정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연구현장 의견 우선순위 등을 검토

2 기본지침 마련 (과기정통부, '23.3월)

- 현장 연구자·제도개선위원회 등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

* 제도개선위원회 상정 및 의견 검토 (3.9.)

<제도개선위원회 주요 검토 의견>

-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비 인정범위 확대 등 연구비 사용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
-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IRIS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
- 연구보안을 연구진실성 및 연구윤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체계화할 필요

Ⅲ. '23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

목표

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보호하는 R&D제도 기반 강화

추진 방향

①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

- 1)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부처규정 지속정비 및 혁신법 현장교육 확산
- 2) 종이문서 보관관행 혁파 등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
- 3)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연구지원 모색
- 4) 학생연구자, 박사 후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 지원 안정화

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

- 1)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유연성 제고
- 2)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제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
- 3)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지원 및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애로사항 해소

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

- 1) 양자 등 초기 기초연구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
- 2) 정부납부기술료 제도, 정산금 유예근거 등 기업 특성 반영 제도개선
- 3) 창업 초기기업,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

④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- 1)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
- 2) 이해상충방지방안 등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

1)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부처규정 지속정비 및 혁신법 현장교육 확산

-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혁신법 취지와 달리 연구자육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처·전문기관 규정을 지속 정비
 - ※ 1년 미만 과제도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등 혁신법 상 예외조항을 소극적으로 인정, 자율을 부여하는 혁신법과 달리 장비구매 자체규정 적용 등
- 협약 변경, 연구개발비 집행, 연구성과 관리 등 연구자들이 관심 많은 제도에 대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교육 확산
 - ※ 범부처통합시스템(iris) 내 제도문의 게시판 내실화, 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교육 신설 등

2) 종이문서 보관관행 혁파 등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

-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관면제 규정의 명확화*, 등록된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금지규정 신설 검토
 - * 예시 : (現)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→ (改)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- 협약 및 연차보고 시 제출 필수서류를 체계화하여 알리고, 과제 신청·정산·평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*등 시스템 고도화 지속
 - * 신청자격(중소·벤처 여부, 신용정보), 연구실적(논문, 특허, 표준 등), 행정정보(국세청·관세청 정보 등) 외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행정서류의 중복제출 최소화

3)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연구지원 모색

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원가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
 - ※ (예시) 간접비 중 연구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보완

4) 학생연구자, 박사 후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 지원 안정화

-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학생연구자 지원을 안정화하고, 박사 후 연구자의 연구몰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* 검토
 - * (예시) 간접비로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가능한 제도의 활용 활성화방안 마련

1)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유연성 제고

- 중장기 대형과제(예: 임무지향형 연구개발)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제목표 변경 및 중단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특별평가제도 활성화

2)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제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

- 국가R&D사업에 국외기관 참여가 가능함을 명확화*하고, 협약 평가 연구비 등 연구수행 단계별 국제공동연구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검토

* (예시) 국외기관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재방법: (現)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→ (改) 국외기관

< (가칭)국제공동연구 관리 가이드라인 예시 >

- ▶ (구) 공동관리규정과 비교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관리 방안을 연구수행 단계별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

분야	주요내용		
과제선정	1. 국제공동연구 정의	2.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	3. 과제 선정
협약	1. 협약 대상 및 기간	2. 협약의 변경	
연구개발비	1.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 기준	2. 연구개발비 계상기준	3. 연구개발비 정산
연구개발성과	1. 연구개발성과의 공개	2. 연구개발성과의 소유	

-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검토

3)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지원 및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의 애로사항 해소

- 포상형 연구개발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 검토
- 지방현장과 밀접한 연구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방안 검토

1) 초기 기초연구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

- 규모·위험이 큰 양자 등 초기 기초연구에 대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 참여유인 제고

※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관련 소부장 기업과 같이 별도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

< (참고) 소부장 기업의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	일반적 적용	가이드라인 적용	소부장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
· 중소기업인 경우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연구개발비의 80% 이하	연구개발비의 80%
· 중견기업인 경우	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연구개발비의 65% 이상 ~ 75% 이하
·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연구개발비의 50% 이하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

2) 정부납부기술료 제도, 정산금 유예근거 등 기업 및 연구분야 특성 반영 제도개선

-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방향 등 검토
- 부도·폐업·파산 등 경영악화 시 정산금 등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검토
- 평가의견으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, 대학과 다른 기업 평가체계 개선 검토

3) 창업초기기업,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연구환경 지원

- 창업 초기기업,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몰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
- ※ (예시)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파견비 계상범위 확대

1)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

-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구자율성·개방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방안 마련
 - 연구보안 관련 법령체계 종합분석을 통한 연구보안 법령체계 재정립
 - 연구보안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·기준, 규정에 대한 정비 추진

2)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보안제도 보완

- 해외(미국, 일본, 영국, 호주) 정부 등의 동향,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정책, 기술탈취 위험사례 등 연구보안 해외사례 제시
 - ※ OECD는 포괄적인 연구진실성 안에서 연구안보 정책이 추진되기를 권고('22년)
 - ※ 미(美)·일(日) 등 주요국은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자국 핵심 연구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

<(예시) 기술탈취 위험사례>

- (A국 **대) 연구기관과 당과의 협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대학헌장을 수정하여, OECD는 A국 **대와 공동연구하는 해외기관의 연구성과 탈취 우려('21)
- (A국 ##대) 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졸업생 상당수는 국방분야에 취업.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수출제한 대상(Entity List)으로 포함('20)

- 이해상충방지방안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

IV. '23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

① 제도개선 의견제출 (관계부처('23.4월), 연구현장('23.4월 ~ 5월))
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- 법령 시행 이후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및 기본지침에 제시된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
-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

< 상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>

- 온라인 소통창구(익명제안도 가능)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
 - ※ 접근경로 : IRIS(iris.go.kr) > 알림·고객 > R&D 제도문의 > '23년 R&D 제도개선 제안
- 연구현장의 공감도,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안 반영 여부 결정

② 연구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3.6월 ~ 8월)
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- 연구현장, 부처 등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, 중·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'24년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

③ 연구개발 제도개선 (관계부처, '23.9월 ~)

- '23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

※ 작성방향

①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에 관한 제안

※ 법 시행 이후 규정 변화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포함

- 「연구개발혁신법」과 부합하지 않는 부처별 R&D규정, 전문기관의 업무 관행, 연구기관별 내부규정·관행에 대한 개선의견

② 관계부처·연구현장에서 개선 수요가 있는 제안

- 범부처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나, 다양한 유형의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제안
- 부처별·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 제안
- 창의적·도전적 연구수행을 저해하거나,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연구제도의 규제요인에 대한 개선 의견

③ 구체적인 제안

- 제도개선 제안의 이행을 위해 현황 및 문제점, 제도개선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
○○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

구분	부처명	부서명	직위	이름	전화번호
주관기관	○○부	○○국 ○○과	국장	-	-
			과장	-	-
			사무관	-	-
유관기관	○○진흥원		본부장	-	-
	-		-	-	-

1. 제도개선 제안명:	
2. 관련 근거	※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
3. 제안 목적	
4. 현황 및 문제점	※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
5. 발굴경로	□ 연구자 민원, □ 정책연구, □ 자체조사(설문, 통계 등), □ 업무처리과정 중 자체 발굴, □ 기타 ※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[붙임]으로 제출
6. 제도개선 의견	※ 제도 개선 방안 요약
예시	※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
7. 규정 개정안	※ 규정명, 조항,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
8. `23년도 제도개선 방향과의 관련성	
9. 기대효과	

※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~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

참고

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추진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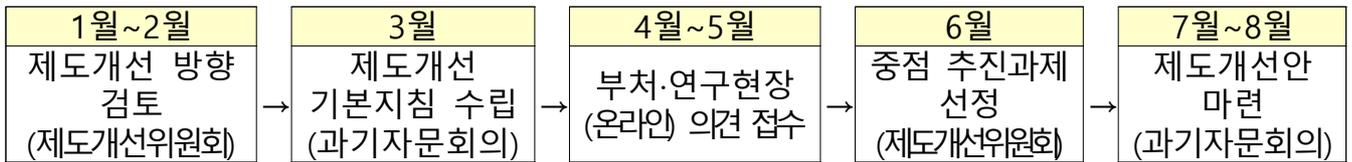
□ 제도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 개요

- (구성) 총 15명으로 대학, 출연(연), 기업 3개 분과로 구성
※ 위원장 1명, 분과별 위원 4명, 법률전문가 2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



- (운영) 정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고(~3월), 연구현장 의견의 시의성·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제도개선안 검토(~8월)
※ '22년 제도개선위에서 중장기과제로 분류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병행

< 정례화된 현장중심 제도개선 절차 >



□ 주요 추진경과

- (연구현장 간담회) 제도개선 수요 반응을 위해 주제별(연구보안, 사회문제, 국제협력, 혁신도전), 주체별(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, 대학, 출연연, 국립연), 권역별(수도·강원권, 충청권, 호남권, 영남권)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('22.11월~'23.2월)
- (제도개선위원회) 위원별 및 '22년 중장기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고,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을 검토('23.1.27. 착수회의, 3.9. 2차회의)

□ 향후 계획

- 온라인 연구현장 의견수렴('23.4~5월) 결과 검토, 시의성·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등을 선정 및 분류('23.6~8월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
담당자	한지현 사무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2-6954 E-mail : hjh6936@korea.kr